

제429회 국회  
(정기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30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 상정된 안건

- |                                                                            |   |
|----------------------------------------------------------------------------|---|
|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 2 |
|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                           | 4 |
| 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                       | 4 |
| 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                | 4 |
|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4 |
|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 | 4 |
|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        | 4 |
|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4 |
| 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                       | 4 |

(15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임이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단말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소관기관은 임원급 이상 및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2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이자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2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참고인 1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 중의 1명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식 보수 수령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최근 3년 동안 7개 계열사로부터 620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무슨 분신술이라도 쓰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동빈 회장이 무려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신동빈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었는지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를 다루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롯데지주의 PBR 열만 줄 아십니까? 0.35입니다. 그런데 지배주주는 수백억 원씩 보수를 챙겨 갑니다. 이러니까 롯데지주 소액주주 연합·연대가 어제 공식 주주서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인 삼성생명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탈회계를 포함한 회계처리 문제에 자산운용 비율 문제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면 외국인 투

자자가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힘센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와 예외를 인정해 주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 신뢰 없이 코스피 5000 가능하겠습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정무위에서는 SK 최태원 회장과 쿠팡 김범석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기재위는 재벌 총수 부르면 큰일 납니다? 기재위는 재벌 총수 안전지대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종합국감 때라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여야 간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차규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10월 13일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 요청해서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증인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3일 이후에도 필요하시면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과 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짧게만, 저도 한 1분만 주시면……

○위원장 임이자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세청 감사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계속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9월 9일 날 한국일보에서 실제 이 관련된 기사가 떴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 정황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이 기사의 근거가 됐던 김건희 특검에서 만들어 놓은 공소장도 제가 최근에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기서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지점을 좀, 그래서 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양당 간사님들께서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여당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십니까?

○김영환 위원 우리 박수영 간사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세청 관련해서 GS리테일 허서홍 대표이사 그다음에 GS칼텍스 대표이사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박수영 간사님께서 잘 좀 고려해 주셔서 사익편취 문제, 일감몰아주기 문제…… 국세청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난번 국감 때부터 그다음에 기재위 여러 현안질의부터 시작해서 문제되어 왔던 것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좀 밝히는 데 우리 박수영 간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15시16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 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4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수시배정 및 배정유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배정유보·불용하는 경우 자자체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배정계획의 조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은석, 이종욱·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수익성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범위를 기존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성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이종욱·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에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동 기금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 측면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기금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하고 이사회의 비대면 개최 근거를 신설하며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신고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도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비대면 개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비대면 개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유상범 위원 저요.

○위원장 임이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장관님, 수출입은행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수출입은행법요.

○위원장 임이자 그냥 말씀하시고요. 간사님, 소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유상범 위원 수출입은행법 20조의2 규정을 보면 대출, 보증하는 데 출자를 하는 경우에 수익성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이런 형식을 규정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만일 출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수익성 확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출자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규정이거든요.

이 대통령령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라고 시켰는데 아마 대통령령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출자는 보증이든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형식을, 이렇게 규정 형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확보가 결과적으로 안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면책조항까지 넣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준 준수 의무를 넣어야지 수익성 확보 의무를 넣는 것은 규정 형식이 전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 조항으로 잘못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령까지 알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규정의 형식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짧은, 잠깐 보면서 드는 경우는 ‘이 경우, 관

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이것은 조금 위험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이자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예, 1차관이 안 오셨으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우려에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령 신설에는……

○위원장 임이자 마이크 좀 앞에 바짝 갖다 대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해당 사업의 기대수익과 손실 및 출자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입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출자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려는 출자를 허용해 주는데 이게 나중에 손실로 이어지면 더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시행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이 또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출자는 허용해 주되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관세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관세가 아니고 한미 대미 투자 관련돼서?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것도 아마 출자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간 걸로 저도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익성 확보가'라고 이렇게 해 버리는 순간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성 확보가 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굉장히, 규정 형식을 보면 굉장히 아주 위험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또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놔야지 이렇게는 규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이자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님.

○정태호 위원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두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한 결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박대출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대통령령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위험성을 좀 줄여들 수,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소위원회의 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원회안으로 오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걸로 알고 앞에서도 아마 1차관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잘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규정 형식을 해 놓으면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인데 수익성 확보라는 말이 수익성 확보가 인정이 돼야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출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래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출자를 하겠지만 손실이 나면 바로 이 규정 하나로 수익성 확보가 미확정적인데 의심이 가는데 이걸 왜 출자했냐는 책임 추궁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장상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라든지 이렇게 씀으로써 대통령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규정이?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통령령은 결국 출자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어떤 식이 될 것이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을 주는 거니까 제가 보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규정해 가지고 수익성 확보가 인정돼야 된다는 걸로 이 법안을 정리하면 사실은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주의의무 규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임이자** 양당 간사님들 잠깐만.....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법을 냈기 때문에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잠깐만.....

(위원장, 간사와 협의)

○**진성준 위원** 아니, 발언을 좀 먼저 하게 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 의견 들어 보시고.....

○**위원장 임이자** 예, 진성준 위원님 말씀 듣고.

○**박대출 위원** 저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의견을 달았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소위원회에 진성준 위원님 들어가셨나요?

○**진성준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박대출 위원님도 소위원회 들어가셨지요?

○**박대출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유상범 위원** 나머지는 다 의결하시지요.

○**진성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발언을.....

○**위원장 임이자** 지금 3시 반이니까 한 3시 15분에.....

○**진성준 위원** 발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3시 45분경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할 수 있도록.....

○**진성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유상범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와 관련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어요. 발의한 바 있는데 이걸 위원장께서 직회부를 해 주지 않으시는 바람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하는 방식으

로 정리하게 됐던 거거든요.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이거를 원만히 정리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앞서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의 수출입은행이 업무를 하는 것은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할 경우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기왕에 대출이 됐거나 보증이 된 사업에 한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 없이, 이런 제한 없이 이제 수출입은행의 판단으로 출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법안이 지금 이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수익성에 불문하고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자의 길을 열되 뭔가 조건을 걸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필요로 저는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직회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함께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수출입은행의 출자 업무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안전판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상범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이것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익성 확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면 충분히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상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면책의 기준이 그 주의의무를 따랐으면 면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석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단순히 이 법안의 문안 가지고 이러면 무조건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는 이 조항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상범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개정안에 이 표현을 담은 취지는 출자의 안정성을 담보를 하자, 확보를 하자라는 충분한 그 긍정적인 측면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표현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문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이 지적하신 그 책임 문제 그리고 처벌 근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소지는 없느냐 그리고 다른 법안하고 형평성에 비추어 봐서 이런 표현을 명시하지 않는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관들은 안전핀을 갖추지 못한 법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교 대상이 되거나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법안을 넣는다고 해서 그 좋은 취지의 법

안대로만 이 법이 앞으로 그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지점을 걱정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유상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위원장 임이자** 유상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법 위원** 전문위원, 출자와 관련돼서 다른 법에 규정돼 있는 형식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저도 과문하지만 이런 식의 후단이나 단서, 단서격의 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건 내가 처음 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출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규정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관련 법에 국책은행에 출자할 경우 이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른 입법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상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점검을 했어요, 소위에서? 그거 안 봤지요?

출자를 규정하는 다른 국책은행에서 출자할 때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하는 형식이 있어요, 어디나 다. 그거 따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남다르게 규정을 해 놨나 싶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익성 확보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는 사례가 없는 걸 전제로 하시고 생각을 한 거고 이 부분에……

○**유상법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소위 할 때 전문위원들이 이거를 다 점검을 해 봤냐고 묻는 건데 왜 이렇게 질문이……

점검을 안 해 봤어요, 다른 법률 규정?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법률 규정이 없다는 거는……

○**유상법 위원** 확실해요? 다른 데는 없는 게 확실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유상법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붙은 것도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익성 확보 조건만 보면 이제 없는 걸로……

○**박대출 위원** 아, 없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대출 위원**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모르겠고요. 수익성 확보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못 봤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런데 발언을 하는 중간에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유상법 위원** 정회하시지요. 정회하고 빨리,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간사로서 말씀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위원장 임이자** 예,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우선은 박대출 위원님도 그렇고 유상법 위원님도 그렇고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모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특히 유상범 위원님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례가 있나 없나라는 얘기는 이미 소위에서 다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전제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확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령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게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슈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동의해 가지고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와 가지고 마치 소위원회의 논의 사항이 부실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안입니다.

○박대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그날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발언을 했던 내용은 다른 법에서 이런 조항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있다라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온 걸로 제 보좌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제 기억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잘못돼 가지고 진짜 다른 법안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이 법안이 내가 그날 그 발언을 했는데, 다른 법안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나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할 때 ‘아, 그런 사례가 있어요라고 하는 발언들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신을 못 하고 있고 확인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유상범 위원이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상기를 시켜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지적한 분도 있고 해서 법적안정성을 위해서는 법률이 명확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소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나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3시 37분 정도 됐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한국수출입은행법 관련돼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정태호 소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소중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또 정부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대안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서 출자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출자할 수 있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대안을 제시합니다.

저희들 소위원회의 취지와 또 이 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안정성은 법치주의와 사회적 안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은 법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며 쉽게 바뀌지 않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이념입니다. 앞으로 소위 심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안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태호 소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들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오기형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시네요? '등' 빼고.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요. 특히 롯데지주와 관련돼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여서 13일 날 국정감사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신동빈 회장도 증인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양당 간사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일자 및 대상기관
고정욱	롯데지주(주) 사장	저PBR 상황 관련, 자기주식 과다 보유 경위 등	오기형	10. 13.(월) 기획재정부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및 세원 탈루 문제 책임 확인	조승래	10. 16.(목) 국세청

참고인(5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일자 및 대상기관
----	----	------	------	-----------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일자 및 대상기관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AI 전력수급 방안	임이자	10. 13.(월) 기획재정부
여다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회계감사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시 총인건비 문제점	차규근	
이창환	열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대표	배당소득 과세 정책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견해 청취	이소영	10. 14.(화) 기획재정부
김영룡	법무사	도산 시 조세채권 우선변제제도 존속 필요성 관련	오기형	10. 16.(목) 국세청
유현종	엔에이치엔링크(주) 스포츠사업실 이사	공식예매처 판매 티켓이 재판매 플랫폼에서 부정 판매되는 문제 확인	조승래	

### ○출석 위원(19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박홍근 안도결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임이자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최은석

### ○출장 위원(1인)

천하람

### ○첨가 위원(6인)

김태년 박성훈 안규백 이인선 정성호 정일영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임기근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유병서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옹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이상 5건 9월 25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이상 3건 9월 2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이상 4건 9월 29일 회부됨